

건설기술사업 관련 제도개선 요구(안)

1.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문제

① 현황 및 문제점

- 현행 대가조정 기준에 연차유급휴가가 제외되어 있어 휴가사용 시 대가조정 대상
-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은 가능하나 이 경우 현행규정상 대가조정으로 인해 사업주 기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공식적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제약을 받음.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비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케 하기도 하나 대부분 그러하지 못함.
-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유급휴가)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있음.

② 현행 관련규정

[관련규정] 「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」 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496호)

제8조(대가조정의 제한)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, 「민방위기본법」 또는 「향토예비군 설치법」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과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(일요일은 제외한다)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.

[관련규정]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」 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-137호)

제12조(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)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「민방위기본법」 또는 「향토예비군설치법」에 따른 훈련기간과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.

③ 개선 요구 : 대가기준에 “연차유급휴가” 를 추가하여 법적 연차사용 자율권을 보장 필요

○ 관련법규 개정(안)

[관련규정] 「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」

제8조(대가조정의 제한)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, **「국가기술자격법」**, 「민방위기본법 또는 「향토예비군 설치법」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과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(일요일은 제외한다) **및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해**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.

[관련규정]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」

제12조(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)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「민방위기본법」 또는 「향토예비군설치법」에 따른 훈련기간과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에 따른 교육기간**과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공휴일 및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**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.

2. 주재비의 현실화 및 산정방식 일원화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목적에 맞게 지급

① 현황 및 문제점

- 현행 주재비 규정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(국토부)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(산자부)에서 기본원칙을 직접경비로서 실제 소요비용이라 규정하고 있으며, 그 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은 상주 직접인건비의 30%로 규정함.
- 주재비 산정방식의 실제 소요비용은 범위와 한도가 모호하며, 직접인건비의 30%는 별도 근거에 의한 수치가 아니라 ‘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모든 비용(숙박비, 식비, 일비 등)의 적정금액’ (산자부 답변)으로 규정.
- 사업장의 경우 발주처의 지급방식과 무관하게 자체규정에 따라 거리별, 직급별로 지급하고 있음.
- 직접경비에 해당하는 주재비를 원칙적으로 “실비정액가산방식”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하나 발주처 또는 현장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 일관성이 없으며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주재비를 실제 소요비용 또는 “직접인건비의 30%”를 기성으로 지급한다 해도 해당 사업장 규정에 맞춰 지급한 주재비로 정산하기 때문에 실제 상주 기술자의 주재비는 약 직접인건비30% 대비 10~40% 수준임.
※ 모든 현장이 실비정산방식이 아니므로 정산 없이 직접인건비의 30% 지급 시 차액 분만큼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현실적 문제발생

② 현행 관련규정

[관련규정] 「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」 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496호)

제11조(직접경비) ①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, 숙박비, 출장여비, 특수자료비,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, 시험비 또는 조사비, 현지 차량운행비, 현장 운영경비(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),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임대비(별도의 현장사무실 제공비용 제외)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.

[관련규정]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」 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-137호)

제8조(직접경비)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(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), 특수자료비(특허, 노하우 등의 사용료),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, 측량비,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, 모형제작비,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 경비(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) 등을 포함하며,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. 다만, 국내 출장여비 및 공사감리 등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주재비는 그 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%로 하고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%로 한다.

③ 개선 요구 : 주재비 산정액의 현실화 및 목적과 취지에 맞게 노동자에게 지급되도록 기준 개선 필요

가. 주재비 산정액의 현실화 방안

- 1안 : 상주 직접인건비의 30%(실제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현행 기준)
- 2안 : 지역별 1인 평균 생계비(국가지표 : 주거비, 식료품비 등) 및 교통비(거주지) → 관계부처 협의 필요(통계청, 한국검정원/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)

나. 주재비의 정산 방식 : 실비정산방식으로 일원화(산정 방식에 따라 결정된 범위 내)

- 실비정산방식으로 일원화 할 경우 : 사업장 자체규정이 있더라도 지급한 만큼 기성으로 환수되기 때문에 사업장은 해당 노동자에게 실비로 전액 지급하게 되는 효과

○ 관련법규 개정(안)

[관련규정] 「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」,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」 통일

1안 : 상주 직접인건비의 30% 정액 정산
 제0조(직접경비) 직접경비는 ~ 중간 생략 ~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. 단, 현장 주재비는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접인건비의 30%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하되, 발주청이 도서지역·산간벽지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증액할 수 있다.

2안 : 지역별 1인 평균 생계비(정액) 및 교통비 정산
 제0조(직접경비) 직접경비는 ~ 중간 생략 ~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. 단, 현장 주재비는 사업 현장 1인 평균 생계비 범위 내의 주거비와 거주지간 교통비를 실비로 정산하되, 발주청이 도서지역·산간벽지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증액할 수 있다.

※ 1인 평균 생계비 : 매 년 통계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지역별 표준생계비 고시

3. 건설기술사업 (설계, 건설사업관리) 대가 기준 관련

①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기준이 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

- 현행 노임단가는 직전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노임단가 적용
- 당해연도 물가상승률,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지표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 발생
-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산출 기준 개정 필요
 - ↳ 직전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+ 경제지표 반영(과업기간 내 전망치)

4. 참조

민원 신청내용

제목	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대한 질의
내용	<p>* 질의1 주재비 산정 기준</p> <p>'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' 제8조 (직접경비)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(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), 특수자료비(특히, 노하우 등의 사용료),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, 측량비,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, 모형제작비,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(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) 등을 포함하며,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. 다만,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%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%로 한다.</p> <p>위 조문에서 주재비를 "상주 직접인건비의 30%로 한다"하였는데 직접인건비의 30%로 규정한 근거와 국토교통부고시 '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' 제9조 (직접경비)의 실제소요비용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?</p> <p>* 질의2 노임단가 일수 제외 대상</p> <p>'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' 제12조(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)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「민방위기본법」 또는 「항토예비군설치법」에 따른 훈련기간과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하다.</p> <p>위 조문의 사업 수행일수 산입 범위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지요? 현행 감리원이 연차를 사용할 경우 수행일수가 제외되는 것과 관련한 질문입니다.</p>
첨부파일	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
답변일	2018-03-26 09:19:13
처리결과(답변내용)	<p>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 (민원신청번호 1AA-1803-140378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.</p> <p>고객님께서 질의 (요청)하신 사항은 주재비 및 노임단가 근로일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」 제 6 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므로 국토부의 「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」이 적용되는 사안의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. ○ 국토부의 「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」 중 “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 ” 제 11 조 (직접경비)에서의 ‘ 실제 소요비용 ’에 관한 답변은 우리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나, 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」 제 8 조 (직접경비)에서의 ‘ 실제 소요비용 ’과 유사하다고 사료됩니다. ○ 동 기준 제 8 조에서의 ‘ 실제 소요비용 ’이란 엔지니어링사업의 발주 전 단계에서 산출하는 대가 (기초금액)에 대해 장차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직접경비의 각 항목을 분명히 정하여 계상하라는 취지이며, 주재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제 소요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모든 비용 (숙박비, 식비, 일비 등)의 적정금액을 상주 직접인건비의 30%로 규정하였습니다. ○ 동 기준 12 조 (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) 제 3 항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하는 경우를 훈련기간과 교육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연차 유급휴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. <p>귀하의 궁금증 해소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항상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김도욱 전문관(044-203-4207)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귀덕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끝.</p>
첨부파일	첨부파일이 없습니다.